폐기물 수출입허가, 산자부서 환경부로 이관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담당해 오던 폐기물 수출입 허가업무를 지난 7월 17일부터 환경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폐기물 수출입 관련 정책만 담당하던 환경부로 폐기물 수출 · 입에 관한 모든 업무가 넘어가게 됐다.

이는 과거 유해폐기물에 속하던 철강슬래그, 폐타이어 등 재활용이 가능한 산업용 원자재가 98년 바젤 당사국총회에서 통제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담당해 오던 폐기물 수출입 허가업무를 지난 7월 17일부터 환경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폐기물 수출입 관련 정책만 담당하던 환경부로 폐기물 수출 · 입에 관한 모든 업무가 넘어가게 됐다.

8월 9일부터 병원 동물사체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

지난달 9일부터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동물사체가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은 앞으로 동물사체를 멸균 또는 소각처리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무단투기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탈황설비 등 국산개발 우수 환경설비 품질인증서 수여

2001년 상반기까지 신청된 한라산업개발(주)의 집진설비 등 40업체 60품목을 90여명의 전문가가 현장실사를 포함하여 3회에 걸친 심사와 설비의 성능평가를 통해 13업체 18품목의 우수한 품질의 환경설비를 선정하고 지난 7월 13일 환경설비품질인증서를 수여하였다.

『환경설비품질인증제』는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한 환경설비가 성능 ·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해 대부분의 수요자가 수입품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국내환경설비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산 우수환경설비의 성능 · 품질과 기술력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환경부, 토양 오염물질 추가 지정

유기용제 등으로 사용되는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퍼클로로에틸렌(PCE), 중금속인 아연 · 니켈 등이 법정 토양오염물질로 추가 지정된다.

환경부(http://www.me.go.kr)는 지난 7월 18일 이같은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오염물질에 대한 논 · 밭 · 과수원 · 목장용지 · 하천 · 체육용지 등의 오염우려 기준을 TCE는 8ppm, PCE 4ppm, 아연 3백ppm, 니켈 40ppm, 불소 4백ppm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이들지역에서 오염대책기준은 TCE가 20ppm, PCE 10ppm, 아연 7백ppm, 니켈 40ppm, 불소 4백ppm으로 지정된다.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실태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대책기준을 초과한 경우 정화대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공장 · 산업지역이나 폐기물매립지 · 폐광산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시 · 도지사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오염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원인자가 6개월 이내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2년 이내에 정화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유소나 정유시설 등 유류저장시설의 경우 정기적인 토양오염 검사시 유류오염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총석유계 탄화수소(TPH)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사업장 133곳 납 등 노출기준 3배 초과

일선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H중공업 등 133개 사업장에서 분진, 납 등 화학적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의 3배 이상을 넘어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모두 2만5천33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분진이나 납,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 화학적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의 3배 이상을 초과한 사업장이 133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출기준을 3배미만 초과했거나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모두 1천440곳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노출기준을 3배이상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 기준 이하로 개선될 때까지 책임관리를 실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또한 노출기준을 3배미만 초과했거나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해당 공정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이 가운데 크롬, 벤젠, 석면 등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126곳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출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1천 451곳에 대해서는 점검표를 배포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고부가 환경전문인력 집중 양성
오염사전예방 · 생태계복원 · 환경컨설팅 등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오염사전예방

최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모두 2만5천33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분진이나 납,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 화학적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의 3배 이상을 초과한 사업장이 133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출기준을 3배미만 초과했거나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모두 1천440곳으로 집계됐다.

이나 토양 생태계 복원, 환경컨설팅 등 신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유망분야 환경전문인들이 집중 양성된다. 환경부는 환경산업 현장중심의 전문인력 수급체계를 확립하고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환경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는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 중 환경전문인력 수급 현황 전망, 환경기술 자격제도, 환경관련 교육과정 비교분석 등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환경전문인력 수요창출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가 검토중인 환경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보면 우선 오염사전예방, 토양 · 생태계 복원, 환경컨설팅 등 부가가치가 높은 환경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토양오염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환경컨설팅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생산공정, 건설, 농업, 해양, 국방 등의 분야에서 환경전문가 양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환경교육과정 지원, 환경농업인 양성, 군부대 환경전문가, 해양생태계 관리전문가 등의 집중 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 정보통신(IT)이나 생물(BT)산업과의 접목을 통한 고부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학제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10년간 해마다 500억원씩 투입, 추진중인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유망 환경신기술 개발, 실용화-상용화함으로써 신규 환경인력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환경경영 확산, 환경친화기업 지원확대, 환경벤처창업 지원 등 환경인증시스템 확대를 통한 수요창출 대책도 마련중이다.

환경부는 이밖에 국제적인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을 설정, 미리 예고해 환경산업 시장 확대도 지원하고 환경기술자격제도도 미래 환경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산신기술 지정제 호응도 높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산신기술 지정제도에 대한 업계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신기술로 검증받은 국산기술은 모두 21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받은 기술은 ▲음식물 쓰레기 산발효액을 이용한 하수고도처리 등 하수처리분야, ▲축산폐수 전처리를 위한 원심분리기술 등 오수처리분야 ▲생석회를 이용한 유기성 폐기물의 토지개량제 제조기술 등 폐기물분야 ▲다단계 모듈형 바이오휠터를 이용한 생활악취 제거 등 대기분야 등 다양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이들 기술을 관보를 통해 알리고 지자체 등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부여 등을 통해 우선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외국기술 또는 기존 국산기술 가운데 신기술 인증을 받은 건수는 4건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환경오염업소 4천817개 적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환경오염업소들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6월 한달동안 전국의 1만456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환경관련법령을 지키지 않은 877개소(8.4%)를 적발했다고 지난 8월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발된 환경오염업소는 1월 535개, 2월 500개, 3월 1천2개, 4월 952개, 5월 951개, 6월 877개 등 모두 4천817개소로 집계됐다.

지난 6월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한 ㈜오뚜기 삼남공장, 영창섬유, 유성기업㈜ 영동공장 등 291개 사업장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6월 한달동안 전국의 1만456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환경관련법령을 지키지 않은 877개소(8.4%)를 적발했다고 지난 8월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발된 환경오염업소는 1월 535개, 2월 500개, 3월 1천2개, 4월 952개, 5월 951개, 6월 877개 등 모두 4천817개소로 집계됐다.

특히 ㈜흥일은 수질오염방지시설 고장으로 행정관청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심야에 2차례에 걸쳐 폐수 44㎥를 방류하는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조업정지 30일 처분을 받고 고발조치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충남 서산 ㈜현대중공업과 두림제지㈜, ㈜한창제지 등 202개 사업장은 시설개선명령을 받았고 대부분의 업소는 배출부과금까지 병과됐다.

이밖에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서울 경희의료원과 대구 파티마병원이 개선명령을 받는 등 26개 폐수배출업소가 적발됐다.

주유소 등 토양오염 감시 대폭 강화

주유소나 저유시설 등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8월 8일 현행 토양오염 정기검사 제도가 검사기관간의 과당경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강화, 토양오염을 적극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양오염 검사기관이 규정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대충 검사를 할 경우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나 지정취소도 할 수 있도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법정기관으로 지정돼있던 대한광업진흥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농업기반공사 등을 일반기관으로 전환해 불법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른 검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국립환경연구원이 갖고 있던 토양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권도 환경부가 직접 행사, 검사기관에 대한 상시 지도를 펴기로 했다.

현재 주유소나 저유시설 등은 1년에 2차례씩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 공사비에 환경관리비 반영

앞으로 건설공사 발주시 환경관리비계상이 의무화돼 친환경적 건설사업추진이 가능케 된다.

또 기술제안서평가대상에 30억원 이상의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추가되고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건교부는 지난 8월 11일 이 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로 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종전에는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관리비용을 계상하는 법적기준이 없어 발주기관별로 형식적인 확보에 그치는 폐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비에 환경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토록 하고 공사종류별로 세부계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충분한 환경관리비가 확보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종전 공사비의 약 0.7% 수준이던 환경관리비가 2% 정도로 상향 조정돼 친환경적 건설사업추진이 가능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건설공사 발주시 환경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돼 친환경적 건설사업 추진이 가능케 된다.
또 기술제안서평가대상에 30억원 이상의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추가되고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경기도, 환경오염정보센터 설치

경기도는 청사내에 도내 대기 및 수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오염정보센터'를 설치,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도(道)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1억2천여만원을 들여 대기 및 수질을 원격으로 감시, 분석할 수 있는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시험가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정보센터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측정망, 환경관리공단의 대형 사업장 굴뚝자동측정망, 일선 시·군의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자동측정망 등의 측정치를 초고속 전산망을 이용,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오염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그린빌딩 인증제 10월부터 모든 건물에 적용

건축물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그린빌딩 인증제가 이르면 10월부터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최근 그린빌딩의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 적용범위 등 그린빌딩 인증에 필요한 구체사항에 관해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10월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이나 업무용건축물에 인증제를 본격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빌딩 인증제도란 건축물의 자재생산과 설계, 시공, 유지관리, 폐기의 전과정에 걸쳐 친환경성을 평가.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향상된 설계와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